#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909 발의연월일: 2024. 9. 11.

발 의 자: 박성훈·안상훈·우재준

고동진 • 조배숙 • 임이자

서지영 • 이상휘 • 조지연

이인선 • 박충권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에 따르면 화물차의 운전자는 적재중량 등에 관한 운행상의 안전기준(적재중량: 적재중량의 110% 이내)을 넘어서 적재한 상태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운전자가 식별되는경우에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운전자가식별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도로법」 제77조 및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를 보전하고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적재중량 등 위반 차량(적재중량: 축하중 10톤 초과 또는 총중량 40톤 초과 차량)을 운행제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렇게 적재중량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이 「도로교통법」과 「도

로법」에 따라 경찰청과 도로관리청이 각각 수행하도록 이원화되어 있으나 경찰청은 적재중량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 및 단속 인력 부족으로 적재중량 안전기준을 위반한 과적차량 단속을 제대로 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경찰청은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적재중량 측정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차량이 적재중량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적재중량 안전기준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7항 신설및 제160조제3항).

법률 제 호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도로에서 제1항에 따른 차의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에 관한 운행상의 안전기준과 제6항에 따른 차의 적재중량 또는 적재용량에 대한 시·도경찰청장의 제한에 대한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로관리청에게 「도로법」 제77조제4항에 따른 차량의 적재량 측정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관리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6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9조제1항·제4항"을 "제39조제1항·제4항"으로, "영상기록매체"를 "영상기록매체 또는 차량의 적재량 측정자료"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① ~ ⑥ (생 략)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① ~ ⑥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⑦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도로에서 제1
	<u>항에 따른 차의 적재중량 및</u> <u>적재용량에 관한 운행상의 안</u>
	전기준과 제6항에 따른 차의 적재중량 또는 적재용량에 대
	한 시·도경찰청장의 제한에 대한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
	하여 필요한 경우 도로관리청
	<u>에게 「도로법」 제77조제4항</u> <u>에 따른 차량의 적재량 측정</u>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 우 도로관리청은 정당한 사유
키100 <b>フ</b> (키테크) ① ① (레 라)	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60조(과태료) ①・② (생략)	제160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차 또는 노면전차가 제5조, 제6조제1항·제2항(통행 금지	3
또는 제한을 위반한 경우를 말 하다) 제13조제1하고제2하고제	
한다), 제13조제1항·제3항·제 5항, 제14조제2항·제5항, 제15	

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7조 제3항, 제18조, 제19조제3항, 제 21조제1항·제3항, 제22조, 제2 3조, 제25조제1항·제2항·제5 항, 제25조의2제1항 · 제2항, 제 27조제1항 · 제7항, 제29조제4항 • 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 지,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 한다), 제38조제1항, 제39조제1 항 · 제4항, 제48조제1항, 제49 조제1항제10호 · 제11호 · 제11 호의2, 제50조제3항, 제60조제1 항·제2항, 제62조 또는 제68조 제3항제5호를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 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 항에 따른 고용주등에게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2. (생략) ④ (생략)

제39조제1				
<u>항·제4항·제6항</u>				
영상기록매체 또는 차량의				
적재량 측정자료				
1. · 2.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